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08회 제2차 정례회 (2016. 12. 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송인수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6. 11. 18. (금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6. 11. 21. (월)

4. 관련근거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,
-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규정의 개정 사항을(위원회명칭 변경,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사항 등)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6. 주요 개정내용

가. 근거 법령의 변경(안 제1조)

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⇒ 「**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**」

나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1조)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」 ⇒ 「**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**」

다.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

-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비율고려 규정 신설(안 제2조제1항)
- 위원회의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근거 법령을 따르는 규정 신설 및 기존 규정 삭제(안 제3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의3)

라.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, 안 제6조의2)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로 개정됨에 따라,
- 근거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
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하였으며,
- 조례의 안 제1조의 목적에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에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으며,

-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,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양성평등 비율을 고려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3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의3은 위원회의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고, 기존 규정은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2, 안 제6조의2는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,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음.
-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8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나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다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6.10.20. ~ 11.9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